

화성시 병점1동 공고 제2025-48호

공 고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」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사유
1	신*우	2008.09.29	2025.10.01.~2026.09.30.	폐문부재
2	황*민	2008.09.02	2025.10.01.~2026.09.30.	폐문부재
3	소*훈	2008.09.15	2025.10.01.~2026.09.30.	폐문부재
4	강*민	2008.09.16	2025.10.01.~2026.09.30.	폐문부재
5	나*원	2008.09.10	2025.10.01.~2026.09.30.	폐문부재

2. 공고기간: 2025. 9. 29.(월) ~ 10 . 20(월) 【21일】

3. 유의사항: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됩니다.

4. 문의사항: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(☎031-5189-4525)

2025. 9. 29.
병점1동 장인